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2504 |
|----------|-------|

발의연월일 : 2023. 6. 7.

발의자 : 최연숙 · 이인선 · 김상훈

김예지 · 이태규 · 양향자

강은미 · 권은희 · 최승재

金炳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노인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노인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노인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 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구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p>제4조의3(노인친화도시) ① 국가<br/> <u>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u><br/> <u>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u><br/> <u>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u><br/> <u>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u><br/> <u>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u><br/> <u>에서 “노인친화도시”라 한다)을</u><br/> <u>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br/> <u>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u><br/> <u>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u><br/> <u>다)를 노인친화도시로 지정하</u><br/> <u>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 노인친화도시의 지정 기준<br/> <u>· 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u><br/>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br/> <u>정한다.</u></p> |
| <p>第7條(老人福祉相談員) ① 老人の<br/>         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br/>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br/>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老<br/>         人福祉相談員을 둔다.</p> <p>② (생략)</p> | <p>第7條(老人福祉相談員) ① -----<br/>         -----<br/>         -----<br/> <u>-----구에-----</u><br/>         -----.</p> <p>② (현행과 같음)</p>   |